

심사보고서

【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】

의안 번호	514
----------	-----

2024. 9. 12.
도시교통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 및 발의자 : 2024. 8. 23. / 김지훈(민) 의원 등 9명
나. 회부일자 : 2024. 8. 23.
다. 상정 및 의결일자 : 2024. 9. 12.

2. 제안설명 요지

가. 제안이유

우천시 노후하수관로 내 불명수 침입에 의한 시민 사고 예방 및 효율적, 경제적인 공공하수처리시설 운영을 도모하고자 발의된 안건입니다

나. 주요내용

- 하수관로 상태 점검 규정 개정 (안 제5조제1항)
- 하수관로 상태 점검에 관한 방법 신설 (안 제5조제3항, 제4항)
- 「알기쉬운 법령정비 기준」에 따라 관련 용어를 정비함 (별표 2)

3. 검토보고 요지 (전문위원 서진원)

본 조례안은 하수관로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해 안 제5조에 하수관로의 준설뿐만이 아닌 외부에서 유입되는 불명수를 포함하여 점검·조사하고, 매년 세부계획을 수립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하수관로의 정기적인 유지·보수를 통해 하수시설의 경제성을 높이는 동시에 수질오염을 방지하고자 발의된 안건이라 사료됩니다.

4. 질의·답변 요지

○ 회의록 참고

5. 토론요지

○ 없음

6. 심사결과

○ 「원안가결」

7. 소수의견 요지

○ 없음

붙임 : 남양주시 하수도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. 1부.